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신설 2025. 3. 21.>

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(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신청인 (납세 의무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주소		전화번호
			전자우편주소
세무 대리인	성명(상호)		사업자등록번호
	관리번호	생년월일	전화번호

①신청유형	[ ] 최초 [ ] 변경 [ ] 특례 취소

세액공제 대상 주택	② 소재지	
	③ 부동산고유번호	
	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	

	⑤ 구분	특례 적용 후 취득일	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
보유기간 특례	[ ] 재건축 주택	멸실된 주택 취득일: 년 월 일	(부동산고유번호:)
	[ ] 배우자 상속주택	배우자의 취득일: 년 월 일	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혼인관계증명서 1부(배우자 상속주택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	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1. 관리번호란: 「세무사법」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2. 생년월일란: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(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·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)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3. ① 신청유형: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"최초",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"변경",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"특례 취소"의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4. ② 소재지: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신청인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게 되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하고,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의 소재지(동 · 호수 포함합니다)를 적으며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습니다
5. ③ 부동산고유번호: 주택의 건물에 대한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.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"무허가"로 적고,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"보존등기 전"으로 적습니다.
   ※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(0000-0000-000000)를 말하며, "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→ 등기열람/발급 → 간편검색"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.
7. ⑤ 구분: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√ 표시를 합니다.
   가. 재건축: 보유하는 중에 소실·무너짐·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
   나. 배우자 상속: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
8. 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: 멸실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(동 · 호수 포함합니다)를 적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으며, 괄호 안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